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발의자 : 이종호 의원 외 7인

###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09년 6월 2일
- 회부일자 : 2009년 6월 5일

### 3. 제안이유

- 당연직 이사의 임명절차 간소화와 의료원간 인사교류 및 공유 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 도지사의 지도·감독권한을 구체화 등 의료원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 4. 주요내용

- 당연직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절차 생략(안 제3조제3항 단서)
- 의료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한 의료원 상호 간 인사교류(안 제6조)
- 의료원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근거조항 마련(안 제7조)
-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 구체화(안 제10조)

##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임원 임명절차 간소화와 의료원간 인사교류 및 공유재산 무상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도지사의 지도·감독권한을 구체화 하려는 것으로,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가. 당연직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절차 생략(안 제3조제3항단서)

- 임원의 임명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쳐야 하나 당연직 이사는 추천절차를 생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킴.

#### 나. 의료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한 의료원 상호 간 인사교류(안 제6조)

- 의료원 상호간 의료 인력의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균형 있는 인력 배치로 의료발전에 기여함.

#### 다. 의료원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근거조항 마련(안 제7조)

-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로 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문화 함.

#### 라.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 구체화(안 제10조)

- 의료원의 기구와 정원, 인사와 보수, 중요재산 처분 등에 대한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의 구체적인 범위를 구체화 함.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임명절차를 개선하고 의료원간 상호협의를 통한 인사교류와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를 마련하며 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명문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붙임 :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